

전 주 시 보

제1050호 2021. 9. 15. (수)

선	기 관 의 장
람	

고 시

- 전주시 고시 제2021-158호 전주 도시계획시설(어린이공원:아중택지제3공원) 조성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고시
 전주시 고시 제2021-159호 전주 도시관리계획(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)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 전주시 고시 제2021-160호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고시
 전주시 고시 제2021-161호 도로명주소 고시
 전주시 고시 제2021-162호 서신동 감나무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사항 변경고시
 전주시 고시 제2021-163호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·특별회계 세입·세출예산 고시

공 고

- 전주시 공고 제2021-2219호 2021년 등산로 위험구간 정비사업 시행 및 토지사용 공고
 전주시 공고 제2021-2299호 「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 전주시 공고 제2021-2308호 전주 도시계획시설(간담대1소공원) 조성계획 결정(변경)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공고
 전주시 공고 제2021-2309호 전주 도시계획시설(간담대1소공원) 조성계획 결정(변경)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공고

구 청

- 전주시 공고 제2021-2236호 전주 도시계획시설(근린공원:덕진공원)사업 공사완료 공고
 완산구 공고 제2021-521호 도로폐지 공고
 완산구 공고 제2021-532호 도로지정 공고
 완산구 공고 제2021-542호 도로지정 공고
 덕진구 공고 제2021-619호 도로지정 공고
 덕진구 공고 제2021-622호 도로지정 공고
 덕진구 공고 제2021-628호 도로지정 공고
 덕진구 공고 제2021-645호 도로지정 공고
 덕진구 공고 제2021-662호 도로지정 공고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전주 도시관리계획(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)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건설교통부 고시 제2008-91호(2008.3.4.)로 최초 결정된 도시관리계획(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주 도시관리계획(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) 변경 결정을 고시하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1년 9월 15일
전 주 시 장

□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

1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구역명	위치	면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기 정	-	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	전주시 만성동 · 중동 일원	9,852,462.7	-	9,852,462.7	건고-91 (08.03.04)	

□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조서

1.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: 변경없음
2.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**변경** 결정 조서
- 1) 혁신클러스터용지 : **변경**

가) 이전공공기관 용지 : 변경

< 기 정 >

도면 번호	가 구		획 지		입주예정	비 고
	위치	면적(㎡)	위치	면적(㎡)		
합 계	-	6,328,648.3		6,328,648.3		
소계	-	103,438.9		103,438.9		
이전1	①	21,029.0	-1	21,029.0	국민연금공단	모든 필지는 분할·합병 불가
이전2	①	29,871.1	-1	29,871.1	대한지적공사	
이전7	①	52,538.8	-1	52,538.8	국민연금공단	
농생1	소계	1,310,142.2		1,310,142.2	농촌진흥청 및 산하기관 - 국립농업과학원 - 국립원예특작과학원 - 국립식량과학원 - 국립축산과학원 한국농수산대학 농촌진흥청 본청	입주기관의 규모,수요 경향에 따라 필요시 획지 분할 또는 합병 가능
	⑥	577,708.5	-1	577,708.5		
	⑦	294,851.2	-1	294,851.2		
	⑧	52,565.8	-1	52,565.8		
	⑩	249,929.0	-1	249,929.0	한국농수산대학	
	⑪	135,087.7	-1	135,087.7		

< 변경 >

도면 번호	가 구		획 지		입주예정	비 고
	위치	면적(㎡)	위치	면적(㎡)		
합 계	-	6,331,293.3		6,331,293.3		
소계	-	106,083.9		106,083.9		
이전1	①	23,674.0	-1	23,674.0	국민연금공단	모든 필지는 분할·합병 불가
이전2	①	29,871.1	-1	29,871.1	대한지적공사	
이전7	①	52,538.8	-1	52,538.8	국민연금공단	
농생1	소계	1,310,142.2		1,310,142.2	농촌진흥청 및 산하기관 - 국립농업과학원 - 국립원예특작과학원 - 국립식량과학원 - 국립축산과학원 - 한국농수산대학 농촌진흥청 본청	입주기관의 규모,수요 경향에 따라 필요시 획지 분할 또는 합병 가능
	⑥	577,708.5	-1	577,708.5		
	⑦	294,851.2	-1	294,851.2		
	⑧	52,565.8	-1	52,565.8		
	⑩	249,929.0	-1	249,929.0	한국농수산대학	
	⑪	135,087.7	-1	135,087.7		

나) 산·학·연 클러스터 용지 : 변경

< 기 정 >

도면 번호	가 구		획 지		비 고
	번호	면적(m ²)	위치	면 적(m ²)	
합계		87,842.9		87,842.9	
클1	①	9,563.2	- 1	9,563.2	필지의 분할·합병 불가 (단, 입주기업의 규모, 수요경향에 따라 필요한 경우 분할 허용)
클2	①	20,889.0	- 1	10,687.1	필지의 분할·합병 불가 (단, 입주기업의 규모, 수요경향에 따라 필요한 경우 분할 허용)
			- 2	10,201.9	
클9	①	23,253.1	-1	23,253.1	필지의 분할·합병 허용
클10	①	13,200.0	-1	13,200.0	필지의 분할·합병 허용
클11	①	10,003.7	-1	10,003.7	필지의 분할·합병 허용
클12	①	10,933.9	-1	10,933.9	필지의 분할·합병 허용

< 변경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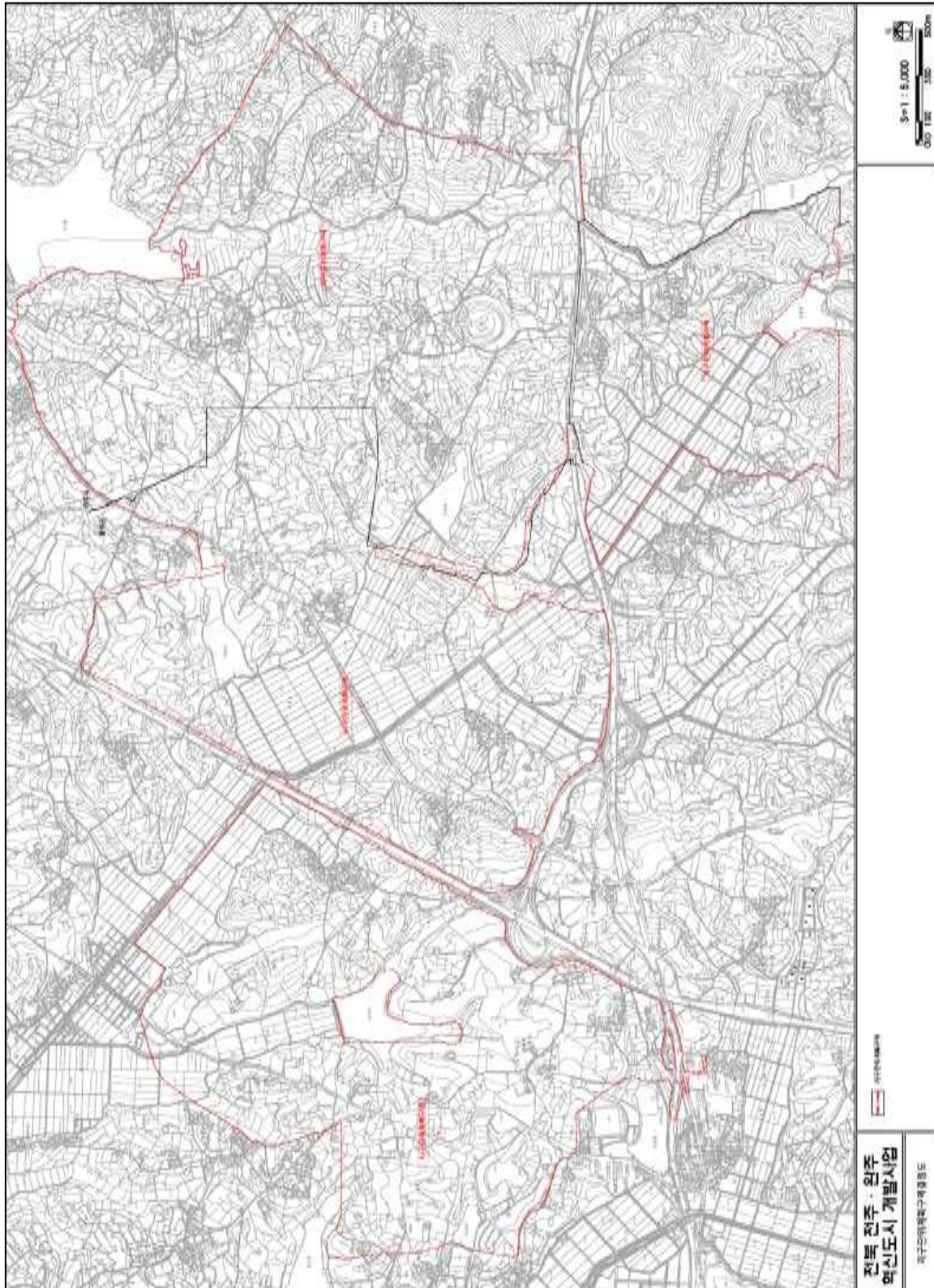
도면 번호	가 구		획 지		비 고
	번호	면적(m ²)	위치	면 적(m ²)	
합계		85,197.9		85,197.9	
클1	①	9,563.2	- 1	9,563.2	필지의 분할·합병 불가 (단, 입주기업의 규모, 수요경향에 따라 필요한 경우 분할 허용)
클2	①	20,889.0	- 1	10,687.1	필지의 분할·합병 불가 (단, 입주기업의 규모, 수요경향에 따라 필요한 경우 분할 허용)
			- 2	10,201.9	
클9	①	23,253.1	-1	23,253.1	필지의 분할·합병 허용
클10	①	13,200.0	-1	13,200.0	필지의 분할·합병 허용
클11	①	10,003.7	-1	10,003.7	필지의 분할·합병 허용
클12	①	8,288.9	-1	8,288.9	필지의 분할·합병 허용

□ 변경 사유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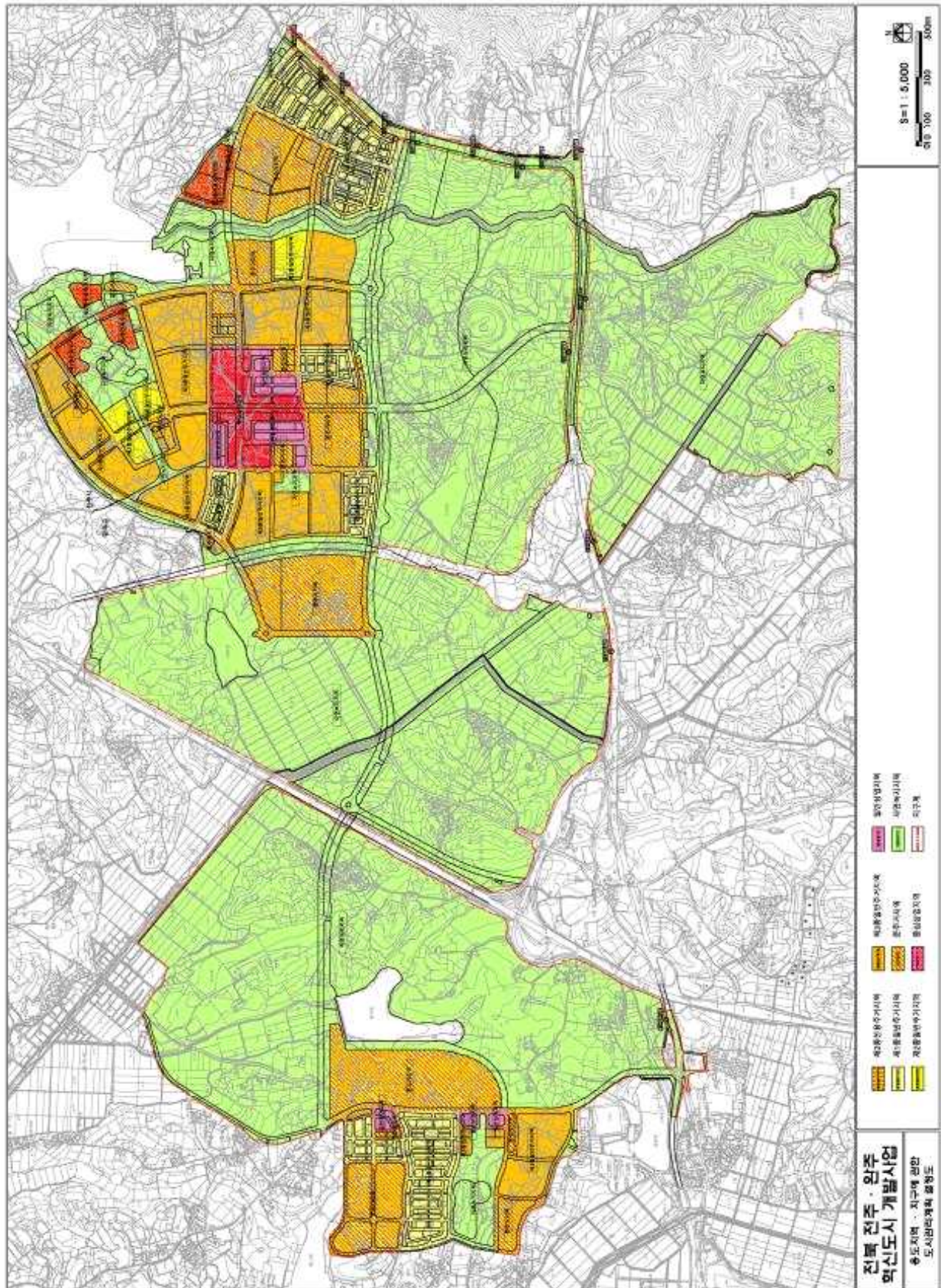
변경내용	변경사유
- 가 구 및 획 지 규모 변경 - 클러스터 12 용지 감소 (당초 10,933.9m² → 변경 8,288.9m²) - 이전공공기관 1 용지 증가 (당초 21,029m² → 변경 23,674m²)	전북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직장어린이집 건립을 위해 클러스터 12용지 일부(클12 10,933.9m² 중 2,645m²)를 이전공공기관 1 용지(국민연금공단)로 편입

□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변경 결정 고시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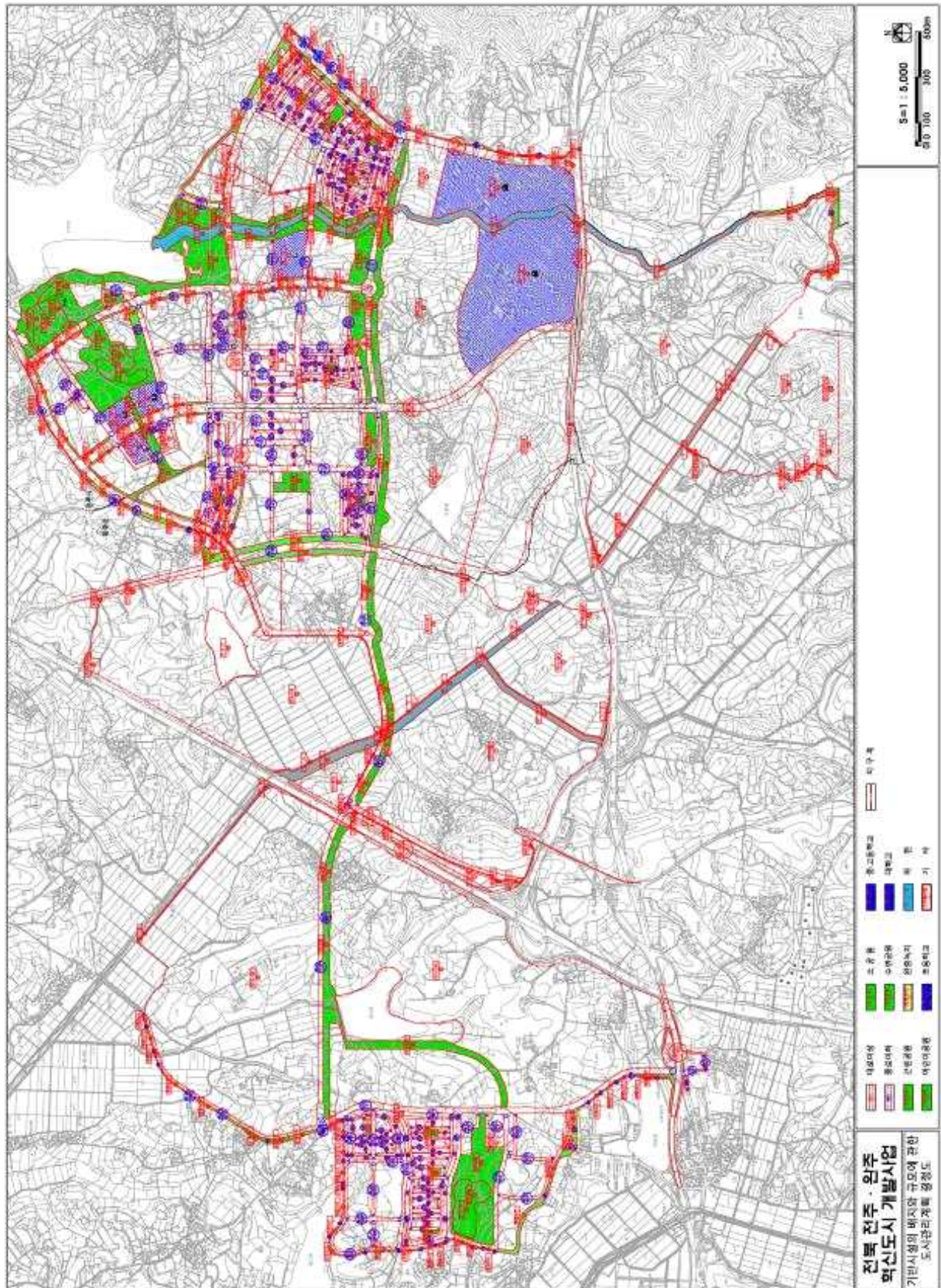
1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(변경없음)



2. 용도지역·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(변경없음)



3.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(변경없음)



4.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도



5.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(변경없음)

획지선 변경에 따른 사항으로 건축물 및 기타사항은 변화 없음



※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오기 사항 정정 : (전주시 고시 제2017- 150호
전주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)

기 정	변 경
가) 제1조 (획지의 분할 및 합병) 나) ① 지구단위계획의 “가구 및 획지계획” 에서 결정된 획지를 가구단위로 하여, 모든 획지는 분할하거나 합병할 수 없 다. 다만, 산·학·연 클러스터용지 9 내지 <u>11 획지</u> 는 제외한다.	다) 제1조 (획지의 분할 및 합병) 라) ① 지구단위계획의 “가구 및 획지계획 ”에서 결정된 획지를 가구단위로 하 여, 모든 획지는 분할하거나 합병할 수 없다. 다만 산·학·연 클러스터용 지 9 내지 <u>12 획지</u> 는 제외한다.